

15:30~17:00 제 2 발표장

電子貿易에 關聯한 國際信用狀慣習의 最近 動向과 課題

서 정 두
(호원대학교)

목 차

I. 序 言	207
II. UCP 500의 問題點과 ICC의 關聯意見	208
III. 電子式 信用狀去來에 關한 國際的 論議	213
IV. UCP 500 改正問題에 關한 論議動向	224
V. 結 言 - UCP 500의 改正方向	229

I. 序 言

오래 전부터 무역거래는 종이서류(paper documents)에 의하여 거래의 기록이나 계약관계의 체결 내지 물품의 운송과 결제 등을 뒷받침해 왔으며, 이러한 결과 무역관계법규도 종이서류의 전제하에 규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업계에서 EDI(전자자료교환)의 사용이 점차 확산되면서 이러한 변화관습을 수용하는 法的裝置가 마련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종이서류를 배경으로 시작된 신용장거래에서는 종이없는 信用狀(paperless LC)의 사용가능성에 대비한 관습법적 재기술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EDI를 활용하여 제조업자와 구매자가 물품의 주문에서 공급에 이르기까지의 선적, 포장, 품질관리, 대금청구와 결제 등에 관한 사전협정하에 신속하고 일관된 공급시스템인 “just-in-time”(JIT) 절차를 도입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신용장관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¹⁾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격적인 電子貿易時代에 대비하여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UCP 500)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주요국가의 信用狀慣習이 최근 어떠한 變化를 추구하고 있으며, 또 향후의 課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층분석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봄으로써, 국내외의 무역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의 대응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 사용하는 “電子貿易”(Electronic Trade)이란 개념은 전자상거래나 전자거래, 인터넷무역, 사이버무역 등과 구별하고자 한다. 즉, 전자상거래나 전자거래는 각국의 국내거래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인터넷무역이나 사이버무역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역거래를 지칭하는 개념이라 한다면, “電子貿易”이란 국내거래와는 구별되고 인터넷 사이버공간뿐만 아니라 EDI 전기통신 등을 포함한 무역거래방식의 총칭으로서 ICC/URGETS(전자무역과 결제 통일규칙) 등 국제규칙상의 공식용어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1) David Whitaker, “Letters of Credit and Electronic Commerce”, 31 *Idaho L. Rev.* 699 (1996) (1997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p. 173 (본고 제3장 4(2) 참조).

II. UCP 500의 問題點과 ICC의 關聯意見

1. 電子貿易 關聯規定과 問題點

EDI 등으로 신용장관습에서 전자무역이 실현되기 위하여는 (i) 信用狀을 전자식으로 개설할 수 있는지, (ii) 신용장이 요구하는 書類(제시서류)를 전자식으로 발행·제시할 수 있는지 등의 두 가지 법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²⁾

물론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SWIFT(세계은행간금융통신망)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국제운송업체에서도 선화증권이나 통관업무 등에 EDI의 활용이 촉진되고 있으므로 전자식 신용장거래가 필연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1) 電子式 信用狀의 開設

UCP 500에서 전자식 신용장(Electronic LC)에 관한 근거규정은 제11조 a항 i호에 있다. 즉,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게 認證된 電信手段(authenticated tele-transmission)에 의하여 신용장을 통지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동 전신수단은 유효한 신용장증서로 보며, 어떠한 우편확인장도 송부되어서는 아니된다.”

본 조항에는 認證(authentication)에 관한 정의가 없으나, UCP 500 제7조 a항에서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외관상 眞正性(authenticity)을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조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신용장상에는 署名을 요하지 아니하고, 둘째 인증된 신용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認證方法을 반드시 코드, 표지 또는 기호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없다.

따라서 신용장의 진위여부는 현실적으로 (i) 신용장 통신문상의 컴퓨터 코드 방식, (ii) 통신망에 접근하는 암호방식(password, call-back 등), (iii) 통지은행이 개설은행에게 확인문을 회신하는 방식, (iv) 신용장의 전송 전후에 양쪽 은행간에 구두로 통화하는 방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2) Benjamin Wright,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2nd ed., Aspen Law & Business, 1996, p. 21:26.

결국 UCP 500은 신용장의 개설에서 署名(signature)에 의한 인증방식이 아닌 통지은행에 의한 진정성 확인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이서류시대의 서명방식을 포기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³⁾

만약 통지은행이 眞正性을 확인할 수 없는 전자식 신용장을 통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지은행은 개설은행과 수익자 모두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동 제7조 b항). 또 잘못된 전자식 신용장이 접수된 경우에는, 통지은행은 수익자 앞으로 불완전하고 불명확한 지시라는 것을 통고하고 개설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용장은 통지은행에게 完全하고 明確한 指示가 접수된 때에만 개설되어진다(동 제12조).

(2) 電子書類 提示의 有效性

UCP 500에는 전자식 제시서류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제5조 b항에서 신용장상에는 지급을 위한 提示書類(presentation documents)를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고, 나아가 제20조 b항에는 종이서류 이외의 작성수단에 의한 제시서류의 수리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i) 복사 시스템, 자동화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가 原本(original)이라는 표시가 있고 필요한 경우 서명이 되어 있는 한, 이를 원본서류로 수리하여야 한다. 서류의 署名은 육필, 팩스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부호 또는 기타 모든 기계적 또는 電子的 方式(electronic method)의 인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본 조항에서 “자동화 또는 컴퓨터 시스템”이라 함은 EDI나 기타 유사한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며, 또 이 규칙 제13조 a항에는 은행의 서류심사는 그 제시서류의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판단은 “國際銀行標準慣習”(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UCP 500의 은행표준관습은 EDI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EDI 통신문도 수리가능한 제시서류로서 개방한 입장이다.

그러나 전자서류의 제시는 그 認證問題와 법적 有效性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전자서류상에 제20조 b항에 의거한 “署名”(signature)

3) 미국 신용장법의 경우에는 아직 署名에 의한 인증방식의 신용장 개설가능성에 대하여 개방해 두고 있다(통일상법전 제5-104조).

이 있는 한, 그 진위여부에 관한 安全性이나 법적 효력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⁴⁾

또 UCP 500에는 은행이 EDI 통신문을 수용할 수 있게 제16조에서 “모든 電信手段의 送達”이나 “전문용어의 번역 또는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EDI 통신문을 번역하는 소프트웨어가 전신코드를 잘못 해독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은행은 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3) 現行規則上の 限界性

UCP 500은 은행업계와 무역·운송·보험업계 및 통관당국이 상호 통신망을 연결하여 전자식 신용장과 전자서류의 제시를 수용할 의지만 있다면, 당장 이를 개정하지 아니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며, 단지 전자서류의 제시에 맞는 은행표준관습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UCP 500은 전자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입증기법으로서 어느 정도까지의 “安全性”(security)이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보면 1995년 改正 統一商法典(신용장법)에도 전자식 신용장거래의 安全性에 관한 해결규정이 없다.

전자서류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기존의 종이서류를 전제한 신용장거래에서도 야기되어 온 한계이다.⁵⁾ 만약 은행에게 서류의 안전성까지 책임을 전가시킨다면, 은행이 참여하는 신용장제도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2. “原本書類”에 관한 ICC 決定

UCP 500 이후 가장 많은 논쟁 중의 하나가 原本書類(original documents)에 관한 규정이다. UCP 500 제20조 b항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복사 시스템, 자동화 또는 컴퓨터 시스템, 탄소복사지 등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도 原本이라는 표시가 있고 필요한 署名이 있는 한, 이를 원본서류로 수리하여야 하

4) “Banks assume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forms, ... genuineness, falsification or legal effect of any document.”(UCP 500 Art. 15).

5) Wright, *op. cit.*, p. 21:29.

며, 서류의 署名은 육필, 팩스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부호 또는 기타 모든 기계적, 전자적 방식의 인증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관하여 논쟁이 집중되는 것은 UCP 개정당시에 현대적 전자서류의 작성과 저장 및 수발신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ICC 은행위원회는 1999년 7월에 UCP 500 제20조 b항의 올바른 解釋과 適用을 위한 “決定文”(Decision on Original Documents)을 채택하였다.⁶⁾ 다만 ICC 은행위원회의 결정문이 동 조항의 효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1) 原本性에 관한 決定責任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原本性(originality) 여부에 관한 결정문제는 다음과 같이 (i) 외관상 원본의 표시가 있는 경우, 또는 (ii) 외관상 원본이지만 사실상 원본이 아닌 경우에 주로 야기된다.

첫째, 은행은 서류가 외관상 原本書類로서 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은행은 UCP 500 제23조 a항 iv호나 제34조 b항(원본의 발행통수)을 포함하여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관상으로 표시된 원본만이 유일한 원본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없다.

은행은 서류발행인이 이를 사본이 아닌 原本으로 하겠다는 외관상의 의도에 의존할 뿐이다. 예컨대 전자식으로 작성·저장된 자료를 종이에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原本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보지만, 서류를 텔리팩스(telefax)로 보내거나, 종이에 사진복사(photocopy)를 하거나 또는 탄소복사지(carbon pape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寫本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자식으로 저장된 자료의 전부가 출력되어 있거나 또는 팩스서명(facsimile signature)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는 原本으로 본다.

둘째, 은행은 서류가 사실상(in fact) 原本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없다. UCP 500 제15조에 의하면, 은행은 모든 서류의 眞正性(genuineness) 또는 眞僞(falsification)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즉, 서류가 외관상 原本으로서 표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이는 UCP 500의 적용범위를 벗어나 虛僞 또는 詐欺書類에 적용되는 법률

6) ICC, "Full text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s recent Decision on Original Document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5 No. 3, Summer 1999, p. 5.

에 따라야 할 예외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셋째, UCP는 서류가 은행에 의한 통신문의 수령과 출력되는 텔리팩스, 텔레스, e-메일 또는 기타 시스템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한, 그 서류의 사실적인 작성방법에 관하여 書面(face of document) 이상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넷째, UCP 500 제20조 b항에 언급된 “原本의 表示”라는 요건은 서류의 발행자에 의하여 사본이 아닌 原本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서류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표제에 붙어 있거나 육필로 표시되어 있는 한, 이는 충족된 것으로 본다.

ICC는 본 조항의 의미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2) UCP 第20條 b項의 解釋原則

서류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i) 발행인이 肉筆로 기재, 타자, 천공 또는 타인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나, (ii) 발행인의 원본 筆墨紙上에 나타나 있거나, (iii) 서류상에 原本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본으로 본다.⁷⁾ 다만 그러한 명시가 특정의 제시서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나타난 경우에는 예외이다.

① 肉筆署名이 있는 書類

은행은 서류발행인의 肉筆署名(hand signature)이 기재된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서 수리하여야 한다. 예컨대 환어음이나 상업송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리 인쇄되어 있거나 탄소복사되어 있든, 또는 복사기, 자동기기,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든 불문하고, 육필서명이 있으면 이를 원본서류로 본다.

② 팩스署名이 있는 書類

은행은 팩스서명(facsimile signature)도 육필서명과 동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서류발행인의 팩스서명이 나타나 있는 서류도 원본서류로 본다.⁸⁾

③ “原本性”의 表示 書類

서류상에 “原本”(original), “제2원본”(duplicate original) 또는 “3/3”(third of three)임을 명시하고 있는 서류는 원본으로 본다.⁹⁾ 또 서류상에 동일한 기간과 일자의 부분(정본)이 서류가 사용되면 무효로 한다고 기재된 서류도 원본으로 본다. 그러나 다른 서류(정본)의 寫本(copy)이라든지 또는 다른 서류(정본)를

7) *ibid.*, p. 6.

8) Charles del Busto,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500*, ICC Publication No. 535, 1995. 6, Case No. 18 at p. 56.

9)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ICC Publication No. 565, 1997. 7, R 215 at p. 38.

유일한 原本으로 한다는 명시가 있는 서류는 이를 사본으로 본다.

④ 寫眞複寫에 의한 書類

은행은 특정서류의 寫眞複寫本(photocopy)이라고 나타난 모든 서류는 原本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진복사본이 서류발행인의 肉筆에 의하여 완결되어 있거나 또는 백지가 아닌 발행인의 원본 筆墨紙上에 직접 사진복사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이를 원본으로 본다.

⑤ 書類의 텔리팩스 提示

은행의 텔리팩스(telefax) 기계로 수령하여 작성된 모든 서류는 原本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신용장에서 서류의 텔리팩스 제시를 허용한 경우에는, 서류의 원본제시에 관한 요건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3) 原本이 아닌 書類의 類型

결과적으로 서류가 (i) 텔리팩스로 작성되었거나, (ii) 다른 서류의 寫眞複寫本으로 나타난 서류는 원본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사진복사본이 肉筆로 완결되어 있거나 원본 筆墨紙上에 직접 사진복사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 서류상에 (iii) 서류상에 다른 서류의 寫本이라든지 또는 다른 서류를 유일한 原本으로 한다는 명시가 있으면 이를 사본으로 본다.¹⁰⁾

Ⅲ. 電子式 信用狀去來에 관한 國際的 論議

1. 法的·技術的 安全裝置 確保

(1) ICC DOCDEX 規則의 制定(1996)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신용장분쟁에 대한 전문가의 獨立的이고 公平하며 迅速한 解決을 위하여 1996년 2월에 貨換信用狀 紛爭解決制度의 實現에 관한 作業部(Working Party on the Feasibility of Documentary Credit Resolving Conflict System)를 구성하여 “貨換信用狀紛爭 專門家意見規則”(Documentary

¹⁰⁾ 이상의 UCP 500 제20조 b항(원본서류)에 대한 ICC 결정문은 각 국내위원회, ICC 은행위원회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한 국제은행표준관습을 구성하고 있다.

Credit Dispute Expertise Rules : DOCDEX Rules)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동년 11월에 20여개국의 논평과 ICC 은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발효되었으며, 현재 ICC 은행위원회의 협조하에 파리에 설치된 ICC 國際專門家意見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Expertise)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¹¹⁾

DOCDEX 규칙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제1조 4항), 단지 UCP와 URR(은행간 화환신용장 대금보상 통일규칙)에 의거한 해석이 필요한 신용장조건에 관련된 것일 뿐이며, 또 신용장상에 UCP를 명시적으로 삽입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제1조 1항).

아울러 ICC는 신용장분야의 國際公認 專門家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9년 5월부터 국제금융서비스협회(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 : IFSA)와 은행가공인협회(Chartered Institute of Bankers : CIB)를 통한 지원서를 접수하여 매년 두 차례씩 “公認貨換信用狀專門家”(Certified Documentary Credit Specialists : CDCS) 자격시험도 시행하고 있다(www.cdcs.org).

한편 美國國際銀行委員會(United States Council on International Banking : USCIB : 현 IFSA)와 國際銀行法律 및 慣習協會(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and Practice Inc.)의 후원하에 1996년 9월 워싱턴 근교(Gaithersburg, Md)에서 각종 신용장분쟁의 전문가적 해결을 위한 “國際信用狀仲裁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Letter of Credit Arbitration : ICLOCA)가 창설되었다.

ICLOCA는 1976년의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입각하여 1996년 9월에 자체적으로 “信用狀紛爭에 관한 仲裁規則”(Rules of Arbitration for Letter of Credit Disputes : 이하 “ICLOCA 규칙”이라 함.)을 채택하였다.

ICLOCA 규칙은 당사자간의 신용장관련 계약상에 삽입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또 이 규칙이 삽입되어 있는 한 기타의 貨換推尋이나 資金移替에도 적용이 가능하다(제1조 1항).

이상 ICC의 DOCDEX 규칙과 미국 중심의 ICLOCA 규칙은 모두 신용장분쟁을 소송 대신에 專門化된 解決裝置에 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서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전자는 UCP에 의거한 專門家意見節次를 택하고 후자는 유엔 중재협약에 바탕을 둔 仲裁節次에 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1) L.W. Newman & M. Burrows, “Alternatives for Resolving Letter of Credit Disputes”, *N.Y.L.J.*(Dec. 31, 1996), <http://www.ljx.com/practice> pp. 3/9~4/9.

그러므로 실무상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이나 경제적 편의성 차원에서 보면 DOCDEX 규칙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전문가적 결정의 구속력이나 적용범위에서 보면 ICLOCA 규칙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²⁾

(2) 世界銀行網 CA의 設立(1999)

최근 미국의 Bank of America를 비롯한 세계 최대규모의 9개 은행들¹³⁾이 주도하고, 1개의 기술업체("CertCo., Inc")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電子商去來의 信用提供을 위한 범세계적 銀行網 認證機關(certification authorities : CA)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1999년말부터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들 참여 은행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른 인증기술(certification technology)이나 기술제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계은행망 CA는 디지털 서명기술을 이용한 고객의 일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인증의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역자료가 보안이 취약한 네트워크(인터넷)를 통과하는 과정에도 고객의 일치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¹⁴⁾ 이는 곧 고객의 인증에 따른 CA의 一致性 擔保責任(identity warranty), 즉 인증사고시 피해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구제까지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도 貨換信用狀의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銀行信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기관의 설립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래 신용장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자가 자신의 銀行을 信賴하게 되고, 은행과 은행간에도 서로 신뢰하는 메카니즘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최근 은행들간의 인증합의는 電子商去來의 환경에서도 은행이 고객에 대한 CA의 역할을 겸하게 되면, 위와 동일한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신용장거래에서 매도인의 거래은행은 매도인을, 매수인의 거래은행은 매수인을 상호 인증한다면, 매매당사자들은 해외의 전혀 모르는 자로부터 오퍼를 받더라도 은행망 CA를 통하여 그 실존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2) *ibid.*, pp. 7/9~8/9; 박석재, "화환신용장 분쟁해결규칙에 관한 연구", 중재학회지 제8권, 한국중재학회, 1998. 12, pp. 371~373.

13) ABN-Amro, Bank of America, Bankers Trust, Barclays, CIBC, Chase, Citigroup, Deutsche Bank, Hypo-Vereins Bank 등이 참여하고 있다.

14) Åke Nilson, "Global Banking Network being set up to provide Trust in Electronic Transaction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5 No. 2, Spring 1999, p. 21.

특히 이러한 世界銀行網 CA의 설립계획은 충분한 資金力을 갖춘 정규의 세계일류 금융기관들이 참여한다는 점에 주목할만하고, 나아가 인증대상자의 一致性 擔保責任까지 부담한다는 점에서 기존 CA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2. ICC의 URGETS(1999) 草案

ICC는 디지털시대의 거래관습을 정의함으로써 전자무역거래의 범세계적 신뢰를 얻고자 Åke Nilson(영국)을 의장으로 하여 산하 相關위원회¹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電子商去來事業團”(Electronic Commerce Project : ECP)을 출범시키고, 내부에는 ① 電子貿易慣習作業部(Electronic Trade Practice Working Group), ② 情報保安作業部(Information Security Working Group), ③ 電子用語作業部(E-Terms Working Group) 등의 세 가지 작업부를 두고 있다.

(1) URGETS 草案作成(ETP 작업부, 1999)

ICC/ECP 사업에 따라 Valerie Slowther(영국)를 의장으로 구성된 ICC 전자무역관습(ETP) 작업부는 1999년 11월 ECP 로마회의에서 “電子貿易과 決濟에 관한 統一規則 및 指針”(Uniform Rules and Guidelines for Electronic Trade and Settlement : URGETS) 초안을 작성한 후 각 국내위원회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30개국 이상으로부터의 긴밀한 협조하에 최종안의 조문작업을 마치고, 2000년 5월 ICC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에 있으며, 이 규칙의 최종본은 ICC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는 즉시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할 예정이다.¹⁶⁾

URGETS는 국제무역을 위한 B2B거래에 적용하도록 英文으로 작성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계약상에 이를 삽입하는 한, 이 규칙은 전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또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규칙을 변경할 수도 있다.

또 URGETS는 UCP 등과 달리 수시로 改正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신축성 있는 규칙이 될 것이므로, 각 계약상에 URGETS를 삽입하는 당사자들은 당해계약의 체결당시에 사용한 각 특정본의 규칙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15) ICC 산하의 주요 전문위원회로는 은행위원회(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전신정보기술위원회(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금융보험위원회(Financial Services and Insurance), 운송위원회(Transport), 국제상관습위원회(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등이 있다.

16) Åke Nilson, “What’s the latest on ICC rules for electronic trade”,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6 No. 1, Winter 2000, p. 5; Vol. 6 No. 3, Summer 2000, p. 24.

특히 URGETS는 전자통신문에 의한 電子契約에 있어서, (i) 당사자에 대한 契約有效性의 검증의무를 면제시켜 줄 필요성, (ii) 전자계약 통신문양식을 적용가능한 國內法과 國際法에 합치시켜 줄 필요성, (iii) 전자계약의 締結時期와 場所에 관하여 청약의 승낙이 청약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到達한 때로 정의할 필요성 등의 문제들에 대한 일정한 指針을 제공하고 있다.

① 電子通信文의 保安과 檢證

전자통신문의 保安(security)과 檢證(verification)에 관련하여 URGETS는 “모든 전자통신문에는 반드시 발신자와 수신자를 명시하여야 하고, 공인된 전자기술에 의한 전자통신문의 완전성과 진정성의 검증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조).

이것은 모든 전자통신문이 當事者에 관하여 完全하여야 하며, 또 각 당사자가 그러한 통신문이 완전하고 변질됨이 없이 의도된 송신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檢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URGETS는 전자통신문의 데이터 보호와 비밀유지를 위하여 수권없는 접근, 지연 및 파괴나 분실의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전자데이터가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고 데이터보호법상 일정한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URGETS는 “(i) 통신문의 내용은 秘密維持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여야 하며, 다만 공중에서(in public domain) 사용되는 정보는 비밀로 보지 아니한다. (ii) 통신문은 거래당사자 쌍방의 國內法이 허용하는 특정의 暗號方式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② URGETS 草案의 內容要約¹⁷⁾

첫째, “電子契約”(electronic agreement)이라 함은 전자통신문의 交換에 의하여 체결이 되고, 당사자들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비롯하여 이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하나 이상의 電子貿易去來에 관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1조 2항).

또 전자계약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래할 물품이나 서비스의 價額과 明細事項, 引渡와 決濟條件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또 당해거래에 적용되는 기타의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7) Valerie Slowther, “The importance of the new ICC Rules for Electronic Trade and Settlement”,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5 No. 1, Winter 1999, pp. 15~17.

둘째, 송낙의 時期와 場所問題에 關連하여, 전자통신문의 사용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계약은 어떠한 청약의 承諾을 구성하는 전자통신문이 청약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到達한 시점과 장소에서 성립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4조 3항).

셋째, 전자통신문의 檢證問題(verification)에 關連하여, 모든 전자통신문에는 반드시 發信者와 受信者를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통신문 자체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기타의 여하한 합의조건에 따른 전자통신문의 완전성과 진정성의 檢證方法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넷째, 통신문의 受領期限 問題에 關連하여, 전자통신문을 수령한 모든 당사자는 關連된 전자계약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반드시 그러한 전자통신문의 受領翌日로부터 第2營業日 이내에 모든 통신문을 처리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개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 1항).

다섯째, 통신문의 誤謬問題(error)에 關連하여, 발신자는 전자통신문의 完全性과 正確性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다만 모든 사정으로 보아 수신자에게 어떠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에 關하여 즉시 발신자에게 通知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3항).

(2) GUIDEC 制定配布(정보보안작업부, 1997)

ICC는 1987년의 UNCID (Uniform Rules of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 Data by Teletransmission : 무역자료 전송교환에 관한 통일규칙)와 1990년의 개정 INCOTERMS(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를 통하여 인도증거로서의 EDI 통신문도 종이서류와 동등한 法的效力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ICC/ECP(전자상거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구성된 ICC 정보보안작업부(Information Security Working Group)는 1995년 11월에 전자상거래의 법적 측면과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의 설립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7년 11월에 “디지털로 保障되는 國際商去來의 一般慣行”(General Usage for International Digitally Ensured Commerce : GUIDEC)의 초판본을 발표하였다.¹⁸⁾

18) GUIDEC에서는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이나 ‘인증’(authentication)이라는 용어의 불명확성을 피하기 위하여 ‘보장’(ensur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데이터 통신문을 보장한다는 것은 보증인이 이를 식별하는 것 이상으로 보장을 한 통신문이 그대로 보존되었음을 승인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이에 구속되기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GUIDEC은 각국의 서로 다른 법제하에서 현행법이나 관행상으로 디지털 통신문을 어떻게 保障하고 證明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인 基準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현재의 거래관행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의 위험과 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디지털 서명자, 인증기관 및 이에 의존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 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¹⁹⁾

GUIDEC은 1996년의 “UNCITRAL 電子商去來標準法”(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과 1996년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디지털署名指針”(Digital Signature Guideline)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최근에는 그 동안의 변화를 반영한 GUIDEC 제2판의 초안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3) E-Terms 서비스 開始(전자용어작업부)

E-Terms 서비스란 ICC/ECP(전자상거래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ICC 전자용어작업부(E-Terms Working Group)로 하여금 웹 공간에 맞는 標準去來條件들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법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E-Terms 작업부는 웹 언어인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내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사용하여 ICC “標準國際賣買契約書”(Model International Sales Contract)의 전자판을 개발해 두고 있으며, 나아가 運送·保險·金融分野의 표준전자계약서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²⁰⁾

따라서 사용자가 Hyperlink에 클릭하면 각 항목별로 서로 다른 계약조건들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이들 계약자료 중에 원하는 조건을 모두 선택한 후 “확인” 버튼만 누르면 자동인식과정을 거쳐 완성된 계약서를 받을 수 있다.

3. BOLERO 規約(1999)상의 反影

세계의 주요 운송업자, 은행, 통신업자 등이 참여하여 전통적인 선화증권을 포함한 모든 무역서류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Bolero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는 Bolero 船貨證券(BBL) 등의 운송서류와 貨換信用狀(documentary credits) 등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1999년 9월에 規約²¹⁾(Rulebook)

19) <http://www.iccwbo.org/home/guidec> p. 1/36.

20) Åke Nilson, *supra note 16,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6 No. 1, Winter 2000, p. 5.

을 제정하였다. 이중에 貨換信用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電子書類 提示의 有效性

Bolero 규약은 이 시스템을 통한 電子傳送方式에 의한 모든 서류의 제시에 적용되며, 또 그러한 전자전송방식의 서류제시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Bolero 시스템의 은행사용자(user)가 개설의뢰인 사용자(applicant user)의 지시에 따라 수익자 사용자(beneficiary user)로 하여금 貨換信用狀²²⁾(documentary credit)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소정의書類를 제시하도록 기재된 화환신용장을 개설, 통지 또는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한 전자서류의 제시를 종이서류(paper document)와 대등하게 수리하여야 한다”(제3.11조 1항 본문).

다만 Bolero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류가 정당하게 수리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a) 화환신용장상에 Bolero 시스템에 의한 提示가 受理可能하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있어야 하고, (b) 그러한 전송문상에 포함된 資料의 明細가 신용장 조건에 의하여 제시되도록 요구된 서류의 명세와 一致하는 서류상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또 (c) 화환신용장상에 특정의 서류가 특정인에 의하여 발행, 인증 또는 서명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電送資料는 그 특정인이나 이를 대신하도록 수권되고 책임도 부담하는 使用者²³⁾에 의한 署名(signature)이 되어 있어야 한다”(제3.11조 1항 단서).

(2) 電子書類의 原本과 寫本

Bolero 규약은 화환신용장의 조건에 따른 전자서류의 原本(original)으로서의 요건과 寫本(copy)의 효력에 관하여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화환신용장의 조건에서 “原本”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의 署名 또는 이를 대신하도록 수권되고 책임도 부담하는 사용자의 署名이 포함되어 있는 通信文²⁴⁾에 의거

21) Bolero 규약은 1994년 6월에 출범한 Bolero가 그 법적기반과 사용자들간의 계약관계를 규율하고자 1998년 1월부터 그 초안작업을 시작하여 1999년 9월에 총 3장 18개조로 구성된 초판본을 발표하였으며, 모든 사용자는 이 시스템에 가입하는 당시부터 이 규약에 의하여 계약을 받게 된다(제2.1.2조 1항).

22) 여기서 “貨換信用狀”이라 함은 그 화환신용장의 개설당시에 유효한 국제상업회의소의 화환신용장 통일규칙(UCP) 또는 1998년 국제보증규칙(ISP98)에 의하여 정의된 保證信用狀을 포함한 모든 화환신용장을 의미한다(제1.1조 27항).

23) 여기서 “使用者”(user)라 함은 Bolero 시스템의 사용자로서 가입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제1.1조 58항).

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그러한 요건이 충족된다(제3.11조 2항).

여기서 “署名”(signature)이라 함은 정당한 디지털서명, 소위 Bolero 시스템의 소유자나 운영자 또는 그 승계인 등(“Bolero International”)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그 서명의 작성당시에 유효한 증명서상에 열거된 공개키(public key)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서명을 말한다(제1.1조 50항).

둘째,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화환신용장의 조건에서 수익자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수령인 사용자”)에게 여러 통의 寫本(a number of copies)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a) 그 수령인 사용자에게 동등한 서류 1통을 전송함으로써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며, 또 (b) 수령인 사용자는 전방향 電送處(onward transmissions)의 수를 결정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종이환경에서의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書類의 수만큼 寫本을 작성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Bolero 선화증권은 어느 한 時點에서 (지시식 소지인, 지참인 소지인, 질권자 소지인, 수화인 소지인 또는 단순 소지인 여부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所持人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제3.11조 3항).

(3) 銀行의 地位(BBL 所持人)

Bolero 규약은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이 Bolero 선화증권(BBL)의 所持人으로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貨換信用狀去來의 당사자들이 갖는 물품에 대한 權利와 義務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으로서 행동하는 사용자가 화환신용장의 이행을 위한 Bolero 선화증권(BBL)의 質權者 所持人(pledgee holder) 또는 持參人 所持人(bearer holder)으로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용자 은행은 화환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이 갖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제3.11조 4항).

4. 美國의 法律規定과 慣習動向

(1) 改正 統一商法典上的 反影

1995년 개정 미국 統一商法典-제5편 信用狀(이하 “개정 신용장법”이라 함.)은

24) 여기서 “通信文”(message)이라 함은 이 규약에서 부여된 제목의 서류상에 명시된 대로 Bolero 시스템을 통하여 송부된 모든 통신, 통지 기타의 정보를 의미한다(제1.1조 37항).

전자방식에 의한 신용장의 개설과 서류제시를 위한 장애요인을 제거하였다.

첫째, 개정 신용장법은 구두방식을 제외하고, 서면(writing) 이외의 모든 방식에 의한 信用狀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즉, “신용장은…(i) 서명이나 또는 (ii) 당사자의 合意²⁵⁾ 또는 [금융기관]의 표준관습에 따라 인증된 어떠한 記錄의 모든 형식으로 개설할 수 있고”(제5-104조), 이 법에서 “記錄”(record)이라 함은 “유형의 수단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電子式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저장되어 있으면서 인식이 가능한 형식으로 재생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제5-102조 a항 14호)라는 규정을 통하여 電子式 信用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둘째, 개정 신용장법은 신용장상에 요구된 書類는 구두방식을 제외하고, 서면이 아닌 電子式으로도 제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즉, “書類”(document)라 함은 “신용장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또는 [금융기관]의 표준관습에 따라 허용된 서면 또는 其他의 手段으로 제시된 환어음이나 … 기타의 기록, 진술 또는 사실·법률·권리·의견의 표시를 말한다.”(제5-102조 a항 6호)라는 규정을 통하여 전자서류의 제시도 기타의 수단으로서 허용한다는 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신용장법 개정취지는 1996년의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標準電子商去來法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표준법은 [무역과 은행업을 포함한] 상사활동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통신문²⁶⁾(data message)의 형식으로 된 모든 종류의 정보에 적용하도록 제정되어 있다.

(2) 信用狀去來의 自動化 論議

미국에서는 EDI에 의한 제조업자와 구매자간의 JIT(신속) 절차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信用狀去來의 自動化(automated LC)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²⁷⁾

① 매수인이 EDI로 매도인에게 購買注文書를 보내고 자신의 거래은행에 信用狀 開設申請書를 보낸다. 은행에 보내는 EDI 통신문에는 이미 설정된 신용장 거래 항목(금액, 유효기일 등)에 상응하는 변수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행의 컴퓨터는 이 통신문을 받아 인증확인 과정을 거쳐 통신문의

25) 이는 당사자의 合意에 따라 정보를 특정의 네트워크나 통신시스템으로 전송할 때에 적용되는 어떠한 규칙에 의한 개설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Whitaker, *op. cit.*, p. 181).

26) 여기서 “데이터 통신문”이라 함은 EDI, 전자우편, 전보, 텔렉스, 팩스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광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생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UNCITRAL 표준전자상거래법 제2조 a항).

27) Whitaker, *op. cit.*, pp. 175~176.

기재내용이 기존의 설정항목과 일치하는지를 검색하고, 모두 이상이 없으면 매수은행의 컴퓨터는 매도은행의 컴퓨터 또는 매도인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信用狀의 각 항목을 전송한다.

③ 신용장 전송내용이 매도은행에 들어오면 매도은행의 컴퓨터는 EDI 통신문에 대한 인증확인 과정을 거쳐 이를 매도인의 컴퓨터에 通知한다.

④ 매수인의 EDI 注文書를 이미 수령한 매도인의 컴퓨터는 EDI 신용장통신문에 대한 인증확인과 두 EDI 통신문의 자동적인 對照作業을 거쳐 매도인에게 이상없다는 신호로 보여준다.

⑤ 물품의 선적시에도 매도인의 컴퓨터는 운송회사에 선적지시를 하면, 운송회사는 제3자를 차단하는 電子式 船貨證券(Electronic BL)을 발행하고 그 접속번호를 매도인의 컴퓨터에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매도인의 컴퓨터는 신용장조건에서 요구하는 보험증권 등 기타의 모든 전자서류를 발급신청하여 각각의 접속번호를 부여받는다.

⑥ 매도인의 컴퓨터는 이들 서류의 모든 接續番號(access codes)를 직접 또는 통지은행을 거쳐 매수은행의 컴퓨터에 전송한다.

⑦ 매수은행의 컴퓨터는 이 접속번호에 의하여 전자식 선화증권 등의 EDI 통신문을 수령하고, 그 정보자료가 당초의 기대내용과 일치하다고 판단될 때 매도은행 앞으로 資金移替를 명령함으로써 신용장거래가 종료된다.

위와 같이 신용장개설과 서류제시를 자동화하는 방안은 몇 가지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신용장거래에 사람에 의한 干涉을 막을 수 있고, 둘째 자료의 반복된 입력과 기록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람의 失手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 사람의 수작업보다는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불일치사항을 전혀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제시서류가 신용장내용과 一致할 것이라는 확실성이 가장 높다.

(3) TradeCard²⁸⁾ 서비스의 開始

최근 뉴욕 중심의 TradeCard 서비스는 신용장을 전제한 것은 아니지만, 매매 당사자들의 TradeCard 거래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거래은행에 수입대금의 信用

28) TradeCard는 세계무역센터협회(WTCA)가 1994년부터 무역서류의 자동전송과 대금결제방식의 전산화를 위하여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서, 2000년 3월부터 미주지역과 아시아를 무대로 마케팅을 시작하였다 (<http://www.tradecard.com/product/faqs.html> p. 2/2).

供與를 신청하여 支給保證(payment guarantee)이 첨부된 전자식 購買注文書를 TradeCard 사의 데이터 베이스에 전송함으로써 시작된다.

이에 따라 매도인과 운송주선인은 船積書類를 갖추어 TradeCard 사에 전송하면, 당사의 一致性 심사엔진을 거쳐 선적서류와 구매주문서간의 일치 여부를 자동 체크한 후 이상이 없을 때 그 결과를 매수인의 신용공여은행에 통지하고, 은행은 지급보증금액을 매도인에게 자금이체함으로써 종료된다.²⁹⁾

TradeCard 서비스도 매매당사자간에 은행의 信用供與가 있고 이를 위한 서류상의 一致성과 獨立的인 去來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신용장과 같은 원리로부터 출발하였다. 단지 이 서비스하에서는 은행의 업무가 支給保證에 의한 신용공여에 국한하고, 서류심사 등의 무역업무는 TradeCard 사에게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용장제도와 크다란 차이가 있다.

TradeCard 제도는 신용공여와 무역업무의 서비스기관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 여부는 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며, 이 제도가 정착되더라도 상당한 세월 동안 종이서류 또는 전자식 신용장이 함께 사용될 것이다.

IV. UCP 500 改正問題에 關聯한 論議 動向

1. Kozolchyk 등 學界의 意見

(1) Kozolchyk 教授³⁰⁾의 慎重論

Kozolchyk 교수는 ICC 정기간행물 “Documentary Credits Insight” 지의 최근호(1999년 가을)에 발표한 “UCP 500을 조속히 改正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다.”라는 논고를 통하여 UCP 500의 개정문제에 대한 慎重論을 제기하였다.

첫째, UCP 500은 信用狀訴訟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993년의 UCP 개정은 전자식 신용장과 전자상거래의 확대, 불일치

29) K. Cottrill, “TradeCard’s here”, *Traffic World*, Vol. 262, Iss. 2, April, 2000, p. 21.

30) Boris Kozolchyk 교수는 현재 미국 아리조나대학에서 국제통상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국립미주지역 자유무역센터의 소장겸 이사장으로서 UCP 500 개정시 USCIB(미국국제은행위원회)의 대표자격으로 ICC 개정작업부에 참여하여 개정안을 기초한 바 있다.

사고의 증가, 거래은행 상호간 불신의 해소를 목표로 한 개정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1983년 UCP 400 이후 1992년까지 신용장소송 건수가 계속 증가하였으나, 1993년 UCP 500 이후 신용장소송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Kozolchyk 교수는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로서 國際標準銀行慣習에 따라 서류일치성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UCP 500의 규정이 미국의 표준은행관습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의 이러한 감소결과는 Kozolchyk 교수를 주축으로 4년간의 연구과정을 거쳐, 1996년에 IFSA(국제금융서비스협회)에 의하여 채택된 “信用狀書類審査에 관한 標準銀行慣習”(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Letter of Credit Documents : SBPED)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였다.

둘째, UCP 500은 신용장의 開設·確認·買入銀行들 相互間의 信賴關係가 잘 반영되어 있는 규칙이라는 주장이다. 예컨대 신용장의 取消可能性 여부에 대한 불안요인의 제거(제6조 c항), 변경신용장의 수익자 승낙시까지 原信用狀의 효력유지(제9조 d항), 開設依頼人 앞의 환어음에 대한 개설은행의 책임유지(제9조 a, b항 iv호), 신용장의 事前通知書의 효력인정(제11조 c항), 일치성 판단을 위한 國際銀行標準慣習의 도입(제13조 a항), 買入行爲의 자격정의(제10조 b항), 각 提示書類의 기본요건 열거(제20조~제47조), 讓渡銀行의 지위와 권리의무의 명확화(제48조) 등이 그러한 특징을 대표하고 있다.

UCP 500의 이러한 특징은 그 후 1995년 미국의 “改正 信用狀法”(Revised Article 5 of Uniform Commercial Code)과 유엔의 “保證信用狀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및 1998년 ICC의 “國際保證規則”(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 ISP98)의 제정, 그리고 각국의 많은 판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Kozolchyk 교수는 UCP 500이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결함도 지적하였다.

즉, (i) UCP 500을 保證信用狀에 적용하더라도 이에 부적합한 규정이 상당수 있다는 점, (ii) 선화증권의 “署名”(signature)이나 서류의 “原本性”(originality)에 관한 규정과 기타의 運送書類에 관한 일부 규정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

31) 204건(1983)→414건(1992)→401건(1993)→269건(1998) (Boris Kozolchyk, “Should UCP 500 be revised in the near future? No”,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5 No. 4, Autumn 1999, p. 3).

다는 점, 그리고 (iii) UCP 500은 電子書類를 기재하여 개설신청을 받은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전자서류의 一致性判斷에 직면하는 서류심사은행에게 거의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³²⁾

(2) Collyer (ICC 銀行委員會 技術顧問)

UCP 500이 시행된 후 7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ICC 은행위원회 기술고문겸 ICC 의견서 편집자인 Gary Collyer(영국)는 세계 각국의 國內委員會를 순회하면서 화환신용장 세미나를 지켜본 결과, 현행규칙은 “原本書類” 규정(제20조 b항)과 “豫定船舶에의 本船積載” 규정(제23조 a항 ii호)의 구조와 기술방법을 제외하고, 아직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³³⁾

즉, Collyer 씨는 적어도 몇 년 동안은 UCP의 改正을 保留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電子商去來의 발전추이와 무역거래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더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며, 지금 UCP 改正作業을 시작하더라도 얼마되지 아니하여 이를 다시 검토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이다. 물론 새로운 “UCP 600”³⁴⁾(가칭)의 改正作業이 진행될 때에는, 그 동안 ICC 은행위원회가 발간한 質疑와 應答을 출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2. ICC 銀行委員會의 公式立場

(1) UCP 改正關聯 聲明書

ICC 은행위원회는 최근 각 국내위원회에 UCP 改正에 관한 의견을 받아 1999년 5월 회의에서 UCP의 전면적 개정에는 약 1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어 1999년 11월 홍콩 회의에서는 UCP 500 이후 本文 자체에 발생한 問題點, ISP98의 制定과 電子商去來의 영향 등을 중심으로 UCP 500의 개정작업을 조속히 진행하여야 하는지를 토론한 후, 다음과 같은 “ICC 銀行委員會 聲明書”(ICC Banking Commission Statement)를 채택하였다.³⁵⁾

32) *ibid.*, p. 4.

33) Gary Collyer, “On why UCP 500 will not be revised soon”,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6 No. 1, Winter 2000, pp. 3~4.

34) ICC 은행위원회에서는 다음 개정본을 벌써 “UCP 600”라고 칭하면 마치 그 개정이 임박한 인상을 준다고 하여 아직 이 명칭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ibid.*, p. 4).

35) *ibid.*, p. 4.

① UCP 500의 問題點과 地位

ICC 은행위원회는 UCP 500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을 분석한 결과, 당장 改正 하여야 할 중요한 理由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UCP 500의 본문규정에 대한 교육적, 해석적 차원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原本書類”(original documents)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면, 기타 어떠한 문제도 改正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며, 원본서류에 관하여도 1999년 7월에 “原本書類에 관한 ICC 決定文”(ICC Decision on Original Documents)을 채택함으로써 은행사회의 관습을 완전히 정리해 둔 상태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② ISP98의 反影問題

ICC 國際保證規則인 ISP98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은 1999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나, 이 규칙이 연구되고 은행업무에 사용되어 사회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保證信用狀에 대한 UCP의 적용 문제도 ISP가 널리 사용된 때에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시간적으로도 ISP에 관한 검증이 아직 불가능한 실정이다.

③ 電子商去來의 反影問題

전자무역의 급속한 발달은 UCP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으나, 이에 관한 規則(URGETS 등)과 절차가 아직 發達段階에 있기 때문에, 종이의 화환 신용장으로부터 출발한 UCP 500의 개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ICC 銀行委員會 聲明書”로 발표된 公式立場은 위와 같은 이유로 향후 몇 년 동안은 UCP의 改正作業을 시작하기에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2) ISBP 目錄化事業의 推進

한편 ICC 은행위원회는 최근 UCP 500 제13조 a항³⁶⁾에 의거한 “國際銀行標準慣習”(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 ISBP)의 목록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ICC가 ISBP 목록을 작성하기로 한 것은 당분간 UCP 500을 개정하기보다는 國際銀行標準慣習을 구체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바탕으로

36) “Compliance of the stipulated documents on their fa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sha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UCP 500 Art. 13(a)).

로 하여 점차 UCP 500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주지역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IFSA(국제금융서비스협회)는 1996년에 이미 SBPED(信用狀書類審査에 관한 標準銀行慣習)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SBPED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번역되어 실무가들에게 중요한 서류심사 목록(check-list)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판 SBPED를 구입하여 자체 전산망에 입력하고 전자서류의 불일치사항을 자동 체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많은 기관에서 교육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ICC/ISBP 목록화 사업은 위의 IFSA/SBPED를 기초로 2000년 6월 30일까지 작업부 目錄草案을 작성하고, 이를 각 국내위원회에 회람한 후 동년 11월말까지 ICC 은행위원회의 ISBP 目錄最終案을 발표할 예정이다.³⁷⁾

결국 ISBP 목록의 제정작업은 UCP의 부칙이나 해석 또는 개정자료의 준비 과정이 아니라, UCP상의 “國際銀行標準慣習”을 명문화하는데 기본취지를 두고 있다. 즉, ISBP 목록은 장차 UCP 500의 개정작업에 도움이 될지언정, 이를 위한 잠정조치가 아닌 항구적 국제은행표준관습을 정리하자는 것이다.

(3) “eUCP”(UCP 電子補則)의 論議

ICC 은행위원회는 당분간 UCP 500의 개정작업을 유보하기로 한 대신에, 2000년 11월 21~22일 이스탄불 회의에서 전자무역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UCP의 유연한 대처를 목적으로 電子書類의 취급방법에 관한 指針인 소위 “eUCP”(信用狀 統一規則 電子補則)를 제정하여 기존의 UCP 500에 첨부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³⁸⁾

37) Donald Smith, “ICC Project o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6 No. 3, Summer 2000, pp. 3~4; <http://www.iccwbo.org/home/news> p. 1/1.

38) <http://www.iccwbo.org/home/news> p. 1/1.

IV. 結 言

- UCP 500의 改正方向 -

본고에서는 電子貿易에 관련된 UCP 500 상의 問題點과 전자식 신용장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UCP 500의 改正與否에 관련된 論議動向에 관하여 알아 본 결과, 대체로 개정문제에 대한 신중론이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정한 명분이 조성되면 UCP 500의 改正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명분상 주된 개정방향은 ① UCP 500 이후 종이서류, 특히 運送書類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規勑으로서, ② 종이없는 電子式 信用狀과 書類提示에 관한 기본규칙을 제공하고, ③ UCP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URR 525와 ISP98 등을 조화롭게 수용하는 規勑으로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종이서류에 관련된 問題들은 쉽게 해결될 것이다. 즉, 그동안 ICC 은행위원회의 意見資料, 미국과 유럽의 국제은행법률 및 관습협회의 會議資料, 국제금융서비스협회(IFSA)의 信用狀書類審査에 관한 標準銀行慣習(SB-PED) 등을 활용하면 이들 문제에 관한 한 최상의 規勑이 도출될 수 있다.

둘째, 電子式 信用狀에 관한 規勑은 ICC/ECP(전자상거래사업단)의 URGETS (전자무역과 결제에 관한 통일규칙) 초안과 Bolero 規약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아직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즉, URGETS 초안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貿易契約과 그 중간당사자인 운송인·보험자·운송주선인·네트워크 운영자간의 去來契約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Bolero 規약은 권리증권의 보안문제, 물품과 대금 등에 관한 각 國內法과의 조화를 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UCP상에 URR과 ISP를 수용하거나 조화를 기하는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UCP 500과 URR 525의 두 規勑을 사용해 본 자라면, 이들 規勑에 대한 해석상 충돌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합하는데 쉽게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UCP 500과 ISP98의 조화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화환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은 지급금융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UCP 500과 ISP98은 전혀 다른 書類去來를 전제로 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넷째, UCP 500 개정시에는 각국 制定法이나 判例法에 대한 저촉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각 국내위원회에 UCP 개정시안을 사전에 통지하여 국내법과의 조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신용장거래에서 가장 많은 쟁점 중의 하나가 서류의 詐欺(fraud)에 관한 것인데, UCP 500은 詐欺書類에 대한 은행의 免責(제15조)과 문면상 일치하는 한 支給義務(제13조 a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사법적 판단에 넘기고 있다. 특히 서류의 사기로 추정되는 강한 의혹이 있어도 은행은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불확실하다.³⁹⁾

따라서 UCP 500 개정시에는 詐欺書類에 대한 行動指針을 설정해 둔다면 많은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UCP는 국내법에 우선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UCP를 채택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섯째, UCP 500 개정시 신용장 관련분쟁의 裁判管轄權(jurisdiction)과 準據法(applicable law)의 선택에 관한 규정도 추가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목전의 UNPAID 사고를 줄이고, 향후 본격적인 전자무역시대에서의 UCP 500 개정방향을 예측하며, 또 개정시 합리적인 국내 의견을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은행관습을 주도하기 위하여는 그동안의 國際信用狀慣習의 흐름에 대한 체계적인 研究分析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UCP 500 이후 ICC 은행위원회로부터 공식발표된 (i)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500*”(1995), (ii)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iii) “*More Queries and Responses on UCP 500, 1997*” (iv)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8~1999*”, (v) Document 470/~으로 발표된 “*Educational Documentary Credit Queries*”와 “*Official Opinions of the Banking Commission*”, (vi) 계간지로 발간되고 있는 ICC 저널 “*Documentary Credits Insight*”, 기타 (vii) IFSA의 서류심사표준 은행관습인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Letter of Credit Documents*”(1996)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9) Reinhard Längerich, “UCP should not deal with fraud. Right? Wrong”,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6 No. 3, Summer 2000, pp. 9~10.